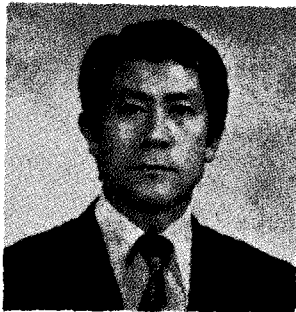


농산물수입 부가금제도 그 도입의 시(是)와 비(非)



김 기 성

농경연 책임연구원
고려대, 서울대학원
연세대 대학원, 행정학박사

I. 서 언

선진제국이 한국 등 선발개도국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는 일반특혜관세제도(GSP) 상의 특혜의 폭(幅)을 축소하려는이웃 일본의 움직임이 있는가 하면, EC는 이 일본의 제의에 따라 한국산 특정상품의 EC역내(域內)수입을 적극 억제하려고 있다. 더욱이 한국의 무역

의존도가 가장 높은 미국은 우리에게 수입문호를 확대 개방하라고 강조하면서 한국상품의 자국수입은 집요하게 규제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장치로서 미국의 이른바 부가관세법(附加關稅法)을 들 수 있다.

그와 관련하여 최근에 우리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은 그들의 수입과징금(輸入課徵金)제도이다. 이런 유(類)의 표현과 의미를 지닌 제도가 우리나라에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나 국내외 경제여건에 의하여 별다른 성과를 드러내 보이지는 아니하였다. 몇해전(1973. 12. 31 이전)에 있었던 외국산사료곡물의 수입을 중심으로 한 사료가격안정기금제도가 그 한 예이다.

수입사료의 원료에 대하여 안정기준가격을 설정해놓고 수입가격이 이 기준가격보다 낮을 때 차액을 기금으로 적립 활용하고, 그 반대일 때는 그 차액을 기금에서 보조해주는 것이 그 내용의 근간(根幹)이었다. 이것을 일각에서는 수입부과금(輸

정부는 내년부터 수입을 자유화하기로 예시된 농축산물 36개 품목 가운데 쌀·베이컨·옥수수·대두 등 15개 농축산물에 대해 오는 87년부터 수입부과금을 물릴 것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싼값의 외국산 농축산물이 대량으로 수입될 경우 국내 농축산업이 크게 위협받을 것으로 우려 국내 농업보호를 위해 품목별로 일정한 가격수준을 정하고 수입품의 가격이 이 수준을 밑돌 경우 수입부과금을 징수, 국산품의 가격을 지지하는 한편 징수한 부과금은 각종 기금에 돌려 생산장려금으로 투자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영농규모의 차이 등 구조적 요인으로 관세율만으로 보호가 어려웠던 국내 농산물을 보호하게 되고 물가안정에 기여할 뿐더러 수입에 따른 차액으로 농업생산 기반 확충에 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관계자들은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양축가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없는 것은 과거 쇠고기 수입도 부과금제도와 유사한 축산진흥기금을 부과하였지만 쇠고기 수입량은 조절되지 못한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부과금이란 무엇이며 홍수같이 물려 들어올 축산물을 막아내는 방파제 구실을 과연 할 수 있을 것인가? 또한 그 기금은 과연 양축가를 위해서 사용될 것인가 경금증은 더해만 간다. 우선 부과금의 성격부터 알아보기로 한다(편집자 주)

入賦課金)이라 하기도 한다.

그런가하면 1973년 3월 우리나라의 임시특별관세법이 폐지됨에 따라 임시수입부가세법(附加稅法)을 제정, 수입에 의한 국제수지의 악화를 막거나 기타 필요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다. 여기서 수입부가세란 수입물품에 부과하는 관세에 부가(附加)하여 부과 징수하는 금액을 일컫는다.

이러한 몇가지 표현의 제도가 내용과 성격면에서 비슷한 듯 하면서도 서로 다른 명칭을 가지고 석연치 않은 한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쓰는 데에 혼란이 야기되며 업계, 행정기관 등에서도 그 구분이 모호하다. 혹자는 이 제도가 “우리나라에서도 단편적으로 이미 실시되어오고 있다.”고 하며 혹자는 EC 회원국이나 서독 등은 이 제도를 일찌기 도입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한국은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 또 믿을만한 관련자료에 의하면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정부의 관계부처에서 몇차례 시도는 하였으나 관계기관간의 견해차이로 아직 보류되고 있는 상태라고 말한다.

이러한 일련의 사실들은 이 제도에 대한 개념 자체부터 아직 확립되어있지 않은 데에 원인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엄밀한 의미에서 한국에는 수입부가세제도(輸入附加稅制度)는 있어도(임시 수입부가세법), 수입부과금제도(輸入賦課金制度)는 없다고 볼 수도 있으며(사료안정가기준가격제도가 폐지되었으므로), 수입과징금제도(輸入課徵金制度)에 관해서는 그 내용이 현행 임시 수입부가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 비슷할뿐 별다른 특색이 없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는 이 제도의 개념을 가지고 일종의 혼란섞인 순환론적 모순에 빠져있기까지 한 것이다.

본고에서는 그러한 개념을 정리하고 외국의 적용사례와 그와 관련한 우리의 입장을 생각해보고자 한다.

II. 개념(概念)상의 시비(是非)

1. 수입부과금(輸入賦課金)설

그것을 수입부과금이라 칭하는 측에서는 영어로 levy 또는 variable levy 등으로 표기하면서 국내농업보전상 필요한 일정수준의 가격을 결정해놓고 이 가격과 실제수입가격과의 차액(=경계가격-CIF가격)을 관리기금(基金) 등으로 적립 활용함으로써 외국농산물수입에 따르는 국내농업의 피해를 줄이고 관세율이나 쿼터제(quota)와 같은 물량·세액 등의 직접규제 없이 국내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스웨덴·EC·서독 등이 채택하고 있는 것을 그 예로 제시한다.

2. 수입과징금(輸入課徵金)설

그것을 수입과징금이라 칭하는 측에서는 영어로 import surcharge라 표기하면서, 수입을 억제하기 위하여 수입품에 부과하는 특별관세나 부가세(附加稅)를 의미한다고 보고 그 사례로 1971년 닉슨대통령이 실시한바 있는 미국의 10% 추가부담금을 내세운다. 그들의 말대로 이 제도의 도입으로 무역적자나 재정적자는 감축시킬 수 있을지 모르나 수입품의 가격상승에 의한 인플레이션, 금리상승, 재정지출 증대라는 부작용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의회(議會)의 심의중이라는 미국의 “무역비상사태 및 수출진흥법”도 그 한 예이다.

3. 수입부가관세(輸入附加關稅)설

수입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관세에 부가(附加)하여 부과하는 특별대금성질의 금액이라는 것으로, 영어로 import surtax로 표기한다. 예컨대 1929~30년 영국 등에서 실시한 제도 등으로서 수입물품의 국내가격이 수입원가에 비하여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것이 일정수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이윤부분을 추가적인 특별관세로 흡수하여, 수입의 억제와 국제수지의 개선에 기여토록 한다는 것이다.

요즘 신문 기사를 보면 앞의 수입과 징금제도와 이 수입부가관세제도를 혼용하는 예가 많다. 그만큼 한계가 모호한 셈이다. 그래서 그 예로도 미국의 84년 통상관세법(通商關稅法)이나 앞에서 예시한 무역비상사태 및 수출진흥법 등의 내용과 같은 것을 내세운다. 즉 국제수지가 악화되거나 기타 긴급히 수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을 때 그 수입품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관세과세가격(關稅課稅價格)의 30%범위내에서 세액을 관세에 부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상 3가지실을 내용면에서 종합해보면 자국의 대내외적 경제사정에 따라 외국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하여 기본관세이외에 부담을 추가하여 부과함으로써 그 물품의 수입을 규제하고 무역 및 재정적자의 해소와 국내산업투자 재원적립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집약할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제도에 관한 정의는 오히려 수입부가금(輸入附加金)으로 칭함이 보다 현실에 접근하는 감이 있다.

Ⅲ. 선진외국의 사례

일본은 자국농민보호와 국내수요억제를 주목적으로 밀, 콩, 우유, 생사, 과일 등 개별품목을 대상으로 수입시 부가금을 부과한다. 종합체계적으로 전품목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개별품목별로 실시하는 것은 외관상 상대국의 자극을 최소화하여 상대적 보복조치를 피하려 함에도 이유가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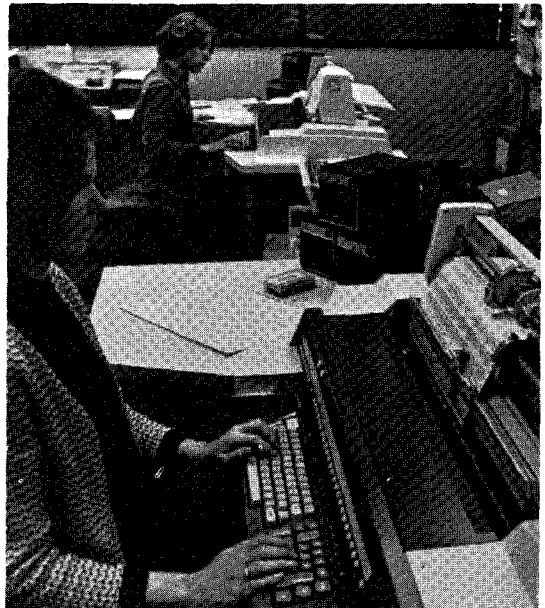
EC는 1965년부터 곡물, 축산물, 청과물 등 종합체계적으로 각 품목의 수입시에 부가금을 부과, EC역내(域内) 국가의 공동농업정책의 일환으로 이른바 농산물수입부가금제도(agricultural levy system)를 채택하고 있다. 가변부가금(variable levy)에 의하여 역외(域外) 경쟁자는 EC시장에서 지지가격이하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미국은 국내농업보호를 위하여 외국산농산물

수입을 규제코자 수입부가금제도를 도입하는 EC나 일본, 그리고 그것을 예의 주시하는 한국 등의 입장과는 다른 측면이 있다. 그것은 미국이 이미 세계적인 농업대국으로서의 위치를 굳혀놓고 있기 때문에 상대국으로부터의 농산물 수입은 큰 의미가 없다는 점이다. 미국이 외국 농산물의 수입에 대하여 규제를 가하는 제도는 수입상품이 미농무성(美農務省)에서 추진하는 정책을 방해하거나 농업가공품의 생산을 심각히 저해한다고 판단될 때 대통령에 건의하여 수입쿼터를 적용하거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농업조정법(農業調整法)과 84년통상관세법(通商關稅法) 등이 주축을 이루고, 현재의 회의심의중이라는 무역비상사태 및 수출진흥법이 우리의 관심대상이다.

미국의 수입부가금제도에 관하여는 뒤에서 우리의 입장과 연관고찰이 계속되므로 일단 줄이고, 그밖의 외국 사례를 보면, 스웨덴의 경우

농산물 수입부가금제도는 농업보호와 교역확대라는 점에서 하나의 시대적 필요악으로 등장한다.



는 2차세계대전시의 식량난 등의 경험을 배경으로 하여 이미 1950년부터 밀, 설탕, 버터, 치즈, 우유, 돈육 등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실시하였고, 서독도 1955년부터 밀, 설탕, 달걀 등에 대하여 이 제도를 실시하여 왔다.

IV. 우리의 현실과 입장

앞에서 정리한 개념과 성격에 비추어 농산물 수입부가금제도는 대부분의 경우 농업보호와 교역확대라는 측면에서 하나의 시대적 필요악(必要惡)으로 등장한다. 자국의 농업보호를 위해서는 꼭 필요하나 대외협력관계에서는 저해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앞에서 언뜻 비친바와 같이 한국에서도 사료용옥수수나 소맥, 기타 축산물 등에 대하여 일시 이와 유사한 제도를 실시한바 있으나 그 성격에 관계없이

러한 국내 수입부가세법의 발동은 마치 미국의 무역비상사태 및 수출진흥법(Trade Emergency and Export Promotion Act)안이 그러하듯이 국제적비난과 당사국의 보복조치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한 시각에서 만일 미국의 상기법안이 구체적으로 자국내 무역적자해소와 산업보호 등 목적으로 수입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한 GATT 제8조 1항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판명이 된다면 우리의 임시수입부가세법이 정한 부가세(附加稅)도 GATT가 지칭하는 “요금 및 부담금(fees and charges)”의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GATT에 위배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이후 우리는 국내농업보호의 필요에 따라 자주 이 제도의 도입문제를 거론하여 왔다. 도입을 주장하는 편은 주로 EC의 서고시제르 내제의 한국도 그러

하는 대외무역정책만 보더라도 단순히 협정 등의 내용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가령 상대국과의 무역수지가 적자인가 흑자인가에 따라서 그리고 적자의 규모가 큰가 작은가에 따라서, 또 무역적자가 자국GNP의 1.5%를 넘는가 안 넘는가에 따라서 상대국의 상품을 수입하기도 하고 않기도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것이다.

둘째, 수입부가금제도를 실시할 경우 상대국으로부터의 보복조치에 의하여 야기될 무역역효과도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비교적 느슨해왔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각국이 모두 자국의 이해를 가리기 위해 훨씬 면밀히 따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가 이 제도를 실시하려

면, 그 실적과 성과의 대외적 평가가 극히 모호하여 상대국으로부터의 반발과 보복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절묘한 방법이 없는 한 어려움이 뒤따르리라 생각한다.

서두에 밝힌 바와 같이 농산물 수입부가금제도는 우리의 농업보호를 위해서도 현재 우리에게 있어서 꼭 필요하다. 점증하는 무역경쟁속에서 어떤 형태로든 이 제도가 시도되어야 하겠으나 상대국의 강력한 대응 보복조치가 도사리고 있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우리 공업제품대외수출의 활로를 유지보전하기 위해서도 이 제도의 도입과 실시에는 신중(慎重)과 묘(妙)를 더불어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